

제4.1호

행정 명령

뉴욕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보는 병원의 운영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총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주법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따라서 행정법 제2-B조 제28항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제4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1년 11월 26일까지 연장하며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

추가로, 주 재난 비상 사태 발생시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특정 기관의 규정이나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행정법 제2-B조 29-a항에 따라 그러한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특정 기관의 규정이나 그 일부를 유예 또는 수정하도록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명령 발표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을 유예 또는 수정합니다.

- 교육법 8602 및 8603조 및 8603조를 비롯해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NYCRR 10장 58-1.5항의 임시 변경으로 승인을 받은 개인인이 SARS-CoV-2 또는 항체의 검출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고 FDA 또는 뉴욕주 보건부가 승인한 분석 또는 장치에 적합한 검사 인력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개인이 SARS-CoV-2 및 독감 확인 등의 목적으로 표본에 대한 임상 실험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임시 변경.
- 지역사회 추천 승인 및 입원 또는 배치 기관에서 퇴소 48시간 이내에 최초 환자의 인증 가정 보건 기관, 장기 돌봄 프로그램, 에이즈 가정 돌봄 프로그램에 방문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 763.5조 세척a.
- 인증 가정 돌봄 기관, 장기 가정 돌봄 프로그램, 에이즈 가정 돌봄 프로그램, 허가 가정 돌봄 서비스 기관이 가정 간호 및 개인 간호에 대한 자택 관리를 초기 방문 서비스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하거나 또는 전화 또는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등 간접적 수단을 통해 대면 및 자택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 763.4조 세척g 2절, 763.4조 세척h 7절 및 8절, 766.5조 세척a 2절, 766.5조 세척d.
- 개인 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간호 감독 방문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NYCRR 18장 제505.14조 세척f 3문단.
- 응급 의료 대원 및 선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건 커미셔너의 재량으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수준에 한정되는 한 전통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이 아닌 병원

등에서 응급 및 비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중단 관련 내용에 따라 공중보건법 30조를 변경 및 선포.

- 인증 응급 의료 대원 및 선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건 커미셔너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 일반적으로 응급 의료 상황이 아닌 환경 및 장소에서 비환자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공중보건법 3001조 세칙7, NYCRR 800.3조 세칙(p)을 변경하여, 공중보건법 3001조 세칙(6) 및 (7), NYCRR 10장 800.3조 세칙(o) 및 (p), 800.15조 중단.
- 면허가 있는 간호사가 코로나19 검사 목적으로 목이나 비강 스왑, 타액, 인후 검사 표본을 채취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중단 관련 내용인 교육법 139장, 공중 보건법 576-b항, NYCRR 10장 58-1.7항.
- 코로나19 검사 목적의 행위를 동일한 조건과 기준을 적용하여 독감 검사에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중단 관련 내용에 따라 교육법 6902항 세칙1, 교육법 6909항 세칙4, 5, 7, 교육법 6527항 세칙6, 7, NYCRR 8장 63.9항 및 64.7항.
- 행정명령 제4호에 포함된 중단 관련 내용에 따라 교육법 6521항 및 6902항, 교육법 6909항 세칙 4, 5, 7, 교육법 6527항 세칙 6, 7, NYCRR 8장 63.9항 및 64.7항.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기타 면허가 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교육법 139조에 따라 처방한 의료 요법을 전문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건부 커미셔너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간호사 이외의 직원이 다음의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범위까지, (1)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검사 목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후, 타액, 비강 또는 비 인두 면봉 표본을 수집, (2) 급성 또는 과거 코로나19 질환 진단을 위한 혈액 표본을 수집,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ACIP)의 가장 최근의 권고 및/또는 해당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 또는 비상 사용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의 최신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4)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면허가 있거나 등록된 간호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의료 행위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2021년 10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